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23.9.22.시행)으로 종합보고서(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종료 후 6개월 이내 작성) 및 조사보고서(연 2회 작성) 권고에 대한 이행관리 주체가 행정안전부로 명확해짐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22.12.27.)에 따른 체계적 보상지원 업무수행을 위해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원단이 관리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 범위 확대 (안 제5조제1항제5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22.12.27.시행)에 따라 보상을 재개(신청·접수: '23.7.~12.)할 예정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도록 규정 신설

나. 지원단의 업무수행 범위 확대 등 (안 제5조제5항 제2호, 제4호, 제6호)

1) 과거사 관련 주무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이행점검에 국한된 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5조제5항제2호)

2) 지원단 소송업무 범위(폐지·활동기간이 종료된 과거사관련위원회가 피고 등이 되는 재송에서의 소송업무)에 '진실규명 된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피고 등이 되는 재송에서의 소송업무'를 추가하고자 함 (안 제5조제5항제4호)

3) 행정안전부 소관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안 제5조제5항제6호)

다. 위원회 안전심의 기간 조정 (안 제6조제3항)

현행 규정상 위원회 안전심의 기간(권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 심의 완료)과 개정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권고 소관 기관의 장은 조사보고서 등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과 상충되는 권고사항 처리 기간을 현실에 맞도록 '권고가 접수된 날부터 120일'로 조정

4. 주요 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제5조제5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에 따른 권고사항”을 “권고사항”으로, “등의 이행상황 점검”을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명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위원회”를 “위원회 또는 진실규명된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행정안전부 소관 권고사항 이행

제6조제3항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지원단) ① 위원회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5조(지원단) ① ----- ----- ----- ----- ----- ----- -----.
1. ~ 4. (생략) <u><신설></u>	1. ~ 4. (현행과 같음) 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u>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u>
② ~ ④ (생략) ⑤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생략) 2. <u>행정안전부장관의 명에 따른 권고사항 또는 폐지·종료 위원회 업무의 후속 조치 등의 이행상황 점검</u>	1. (현행과 같음) 2. <u>권고사항</u> ----- ----- <u>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명하는 사항</u>
3. 3의2. (생략) 4. 폐지 또는 활동기간이 종료	3. 3의2. (현행과 같음) 4. -----

되는 과거사 관련 <u>위원회</u> 가 피고 등이 되는 재송에서의 소송업무 수행	----- <u>위원회 또는 진실규명된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u> ----- -----
5. (생략) <u><신설></u>	5. (현행과 같음) 6. <u>행정안전부 소관 권고사항 이행</u>
제6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에 대한 처리절차)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권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다. ④·⑤ (생략)	제6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에 대한 처리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120일</u> ----- -----. ④·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3257